

제2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2. 30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47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2. 29(화)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2. 29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추경예산 규모

가.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최종예산 | 기 정 액 | | | | | 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소 계 | 당초예산 | 제1회추경 | 제2회추경 | 간주처리 | |
| 계 | 754,298,839 | 754,298,839 | 527,951,983 | 27,063,159 | 25,365,517 | 173,918,180 | - <51,617,791> |
| 일반회계 | 739,811,732 | 739,811,732 | 515,105,346 | 26,996,185 | 23,969,075 | 173,741,126 | - <51,617,791> |
| 특별회계 | 14,487,107 | 14,487,107 | 12,846,637 | 66,974 | 1,396,442 | 177,054 | - |
| 의료급여 | 607,560 | 607,560 | 447,842 | - | 46,566 | 113,152 | - |
| 주민소득 | 889,881 | 889,881 | 461,580 | - | 428,301 | - | - |
| 주 차 장 | 12,989,666 | 12,989,666 | 11,937,215 | 66,974 | 921,575 | 63,902 | - |

※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나. 명시이월 현황

-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키트 지원 등 64개 사업 51,617,791천원

(단위 : 천원)

| 부서명 | 세부사업명 | 2020 예산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계 | 교부세(금) | 국시비 보조금 | 구비 |
| 합 계 : 17개 부서 / 64건 | | 66,771,890 | 51,617,791 | 7,336,741 | 23,892,786 | 20,388,264 |
| 어르신장애인과 (3건/418,201천원) |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키트 지원 | 12,000 | 12,000 | 12,000 | 0 | |
| |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· 데이케어센터 설치(병설형) | 300,000 | 300,000 | 0 | 300,000 | |
| |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| 2,179,847 | 106,201 | 0 | 0 | 106,201 |
| 여성가족과 (6건/3,888,007천원) |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어린이집 방역 지원(방역키트) | 223,846 | 14,400 | 14,400 | 0 | |
| |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| 500,000 | 456,447 | 0 | 456,447 | |
| |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| 3,060,000 | 3,054,024 | 0 | 3,054,024 | |
| | 지혜어린이집 국공립전환 | 188,000 | 188,000 | 0 | 188,000 | |
| | 독산롯데캐슬 국공립전환 | 130,000 | 130,000 | 0 | 130,000 | |
| |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| 4,542,450 | 45,136 | 0 | 0 | 45,136 |
| 아동청년과 (2건/4,800,726천원) |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| 4,048,000 | 4,040,326 | 0 | 0 | 4,040,326 |
| | 창년활동전용공간 「금천창년꿈터」 조성 | 998,000 | 760,400 | 0 | 0 | 760,400 |
| 기획예산과 (1건/40,540천원) |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| 57,000 | 40,540 | 40,540 | 0 | |
| 도시계획과 (2건/269,618천원) |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| 300,000 | 138,200 | 0 | 67,718 | 70,482 |
| |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| 360,000 | 131,418 | 0 | 65,643 | 65,775 |
| 건축과 (1건/50,000천원) |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| 50,000 | 50,000 | 0 | 50,000 | |
| 공원녹지과 (5건/14,724,191천원) |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| 1,387,000 | 574,191 | 574,191 | 0 | |
| |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| 9,750,000 | 9,750,000 | 0 | 0 | 9,750,000 |
| | 꾸러기·소망어린이공원 재조성 | 500,000 | 500,000 | 500,000 | 0 | |

| 부서명 | 세부사업명 | 2020 예산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계 | 교부세(금) | 국시비 보조금 | 구비 |
| | 안양천 테마풍경길 조성 | 1,200,000 | 700,000 | 700,000 | 0 | |
| |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| 3,310,000 | 3,200,000 | 3,200,000 | 0 | |
| 도로과 (2건/1,505,858천원) |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| 1,477,800 | 1,462,662 | 0 | 628,231 | 834,431 |
| | 신속한 제설대책 | 158,341 | 43,196 | 0 | 19,000 | 24,196 |
| 행정지원과 (2건/562,820천원) | 효율적인 청사관리(방역키트) | 119,437 | 22,000 | 22,000 | 0 | |
| | 생활치료센터 운영 | 540,820 | 540,820 | 60,000 | 480,820 | |
| 문화체육과 (7건/3,170,776천원) | 구립합창단 운영 | 64,330 | 10,500 | 0 | 0 | 10,500 |
| |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| 3,400,000 | 2,501,656 | 1,200,000 | 0 | 1,301,656 |
| | 공공미술 프로젝트 | 400,000 | 400,000 | 0 | 400,000 | |
| | 코로나19 대응 문화체육시설 방역키트 지원 | 29,600 | 29,600 | 29,600 | 0 | |
| |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| 17,020 | 17,020 | 0 | 0 | 17,020 |
| |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독서환경 구현 | 170,000 | 135,000 | 0 | 0 | 135,000 |
| | 금천 제3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| 100,000 | 77,000 | 0 | 77,000 | |
| 마을자치과 (9건/1,329,600천원) |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| 179,000 | 179,000 | 0 | 179,000 | |
| | 코로나19 대응 방역키트 지원 | 22,000 | 22,000 | 22,000 | 0 | |
| | 가산동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| |
| |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 | 189,000 | 135,300 | 0 | 135,300 | |
| |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| 701,869 | 22,100 | 0 | 22,100 | |
| | 자치회관 운영 | 106,700 | 102,250 | 100,000 | 2,250 | |
| | 생활안전 CCTV 설치 | 700,000 | 700,000 | 700,000 | 0 | |
| |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| 160,000 | 18,300 | 0 | 18,300 | |
| |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| 245,444 | 50,650 | 0 | 50,650 | |
| 교육지원과 (5건/1,856,528천원) |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| 845,425 | 845,425 | 0 | 0 | 845,425 |

| 부서명 | 세부사업명 | 2020 예산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계 | 교부세(금) | 국시비 보조금 | 구비 |
| | 나래품 방과후학교 운영 | 66,000 | 21,000 | 0 | 21,000 | |
| |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 | 60,000 | 54,632 | 0 | 40,000 | 14,632 |
| |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| 900,000 | 900,000 | | 900,000 | |
| |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| 327,981 | 35,471 | 0 | 35,471 | |
| 지역경제과 (8건/15,296,189천원) | 독산동 맛나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| 366,000 | 122,200 | 0 | 73,520 | 48,680 |
| |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| 331,000 | 330,000 | 0 | 199,200 | 130,800 |
| 지역경제과 (8건/15,296,189천원) |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| 2,576,000 | 1,625,924 | 0 | 1,412,371 | 213,553 |
| |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(시설현대화) | 8,485,240 | 8,457,700 | 0 | 7,128,240 | 1,329,460 |
| |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(주차환경개선) | 4,505,553 | 4,371,098 | 0 | 3,784,665 | 586,433 |
| |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| 153,000 | 21,019 | 0 | 18,217 | 2,802 |
| |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| 467,654 | 338,248 | 0 | 338,248 | |
| |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| 30,000 | 30,000 | 0 | 30,000 | |
| 도시재생과 (4건/3,063,890천원) |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| 400,000 | 334,731 | 0 | 334,731 | |
| |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| 260,000 | 260,000 | 0 | 260,000 | |
| |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| 3,411,340 | 1,889,409 | 0 | 1,855,865 | 33,544 |
| |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| 599,100 | 579,750 | 0 | 579,750 | |
| 청소행정과 (1건/62,010천원) |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| 273,348 | 62,010 | 62,010 | 0 | |
| 보건의료과 (3건/372,437천원) |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| 200,000 | 180,877 | 0 | 180,877 | |
| |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·운영 지원 | 100,000 | 100,000 | 0 | 100,000 | |
| |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| 91,560 | 91,560 | 0 | 73,248 | 18,312 |
| 건강증진과 (3건/206,400천원) | 국가예방접종실시(고위험군A형간염) | 41,180 | 10,000 | 0 | 6,500 | 3,500 |
| | 의료수급권자, 장애인연금및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| 176,400 | 176,400 | 0 | 176,400 | |
| |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(코로나19 환자 이송 등 지원) | 127,605 | 20,000 | 0 | 20,000 | |

다. 명시이월(부서별 현황) : 17개부서 64건 51,617,791천원

(단위 : 천원)

| 연번 | 부 서 명 | 건수 | 이월액 | 연번 | 부 서 명 | 건수 | 이월액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
| 계 | | 64 | 51,617,791 | | | | |
| 1 | 어 르 신 장 애 인 과 | 3 | 418,201 | 10 | 문 화 체 육 과 | 7 | 3,170,776 |
| 2 | 여 성 가 족 과 | 6 | 3,888,007 | 11 | 마 을 자 치 과 | 9 | 1,329,600 |
| 3 | 아 동 청 년 과 | 2 | 4,800,726 | 12 | 교 육 지 원 과 | 5 | 1,856,528 |
| 4 | 기 획 예 산 과 | 1 | 40,540 | 13 | 지 역 경 제 과 | 8 | 15,296,189 |
| 5 | 도 시 계 획 과 | 2 | 269,618 | 14 | 도 시 재 생 과 | 4 | 3,063,890 |
| 6 | 건 축 과 | 1 | 50,000 | 15 | 청 소 행 정 과 | 1 | 62,010 |
| 7 | 공 원 녹 지 과 | 5 | 14,724,191 | 16 | 보 건 의 료 과 | 3 | 372,437 |
| 8 | 도 로 과 | 2 | 1,505,858 | 17 | 건 강 증 진 과 | 3 | 206,400 |
| 9 | 행 정 지 원 과 | 2 | 562,820 | | | | |

4. 검토의견

- 2020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
예산 최종 규모는 7,542억 9,883만 9천원으로
당초예산 5,279억 5,198만원과
제1회 추경 270억 6,316만원,
제2회 추경 253억 6,551만원,
간주처리 1,739억 1,818만원임.

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

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

총 64건 516억 1,779만 1천원임.

이중 행정재경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30건 75억 3,910만 1천원이며

기획재정국 1건 4,054만원

행정문화국 23건 69억 1,972만 4천원

보건소 6건 5억 7,883만 7천원임

○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

‘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비’ 1건 4,054만원임.

가) 기획예산과 명시이월 : 1건 4,054만원

(단위 : 천원)

| 연번 | 사업명 | 2020 예산액 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 | 비고 (사유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|--|
| | | | 계 | 특별 교부세(금) | 보조금 | 구비 | |
| 합계 (1건) | | 57,000 | 40,540 | 40,540 | 0 | 0 | |
| 1 |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| 57,000 | 40,540 | 40,540 | | | [집행시기 미도래] 차년도까지 이어지는 구정 연구단 연구과제 수행기간 등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일부 예산 및 `20. 12. 교부결 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명시이월 |

다. 검토결과

명시이월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¹⁾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²⁾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써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(안) 예산총칙 제5조(명시이월비)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

기획예산과 1건은 2021년 10월까지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기간 등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일부 예산 및 2020. 12. 교부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 연구과제 수행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1) 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2)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수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